

#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원중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승진,  
박칠성, 성흠제, 왕정순,  
우형찬, 유정인, 이영실,  
이용균, 이원형, 임종국,  
전병주, 정준호, 홍국표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·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 조항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하고, 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·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
- 또한,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장치 안전교육의 근거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 신설 (안 제3조제5항)
- 나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,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 주·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제1항제5호)

다. 안전교육 시,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근절 사항 규정 (안 제9조제 1항제5호 및 제6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·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
- 6.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4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안전교육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</p>	<p>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·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안전교육 등) ① ----- -----</p>
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
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  
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 
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 
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5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  
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

6.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 
근절에 관한 사항

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제1항제5호 및 제9조(안전교육 등)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4조	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	117,050
제9조	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	1,435,303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    김중헌  
추계분석관       김지혜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[붙임 1]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소요예산 : 117,050천원('24년 예산안)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사업의 주요내용 :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

[붙임 2] (마포구에너지드림센터)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 안전교육

□ 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(PM) 안전교육교통안전 인증제

- 일 시 : 2024. 04. 28(일), 11:00~13:00
- 장 소 :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(마포 평화의 공원 내 위치)
- 인 원 : 50명 이내
- 접수기간 : 2024. 04. 02(금) ~ 26(금) 15시 까지
- 기타사항
  - : 공공자전거(따릉이) 이용요금 감면 / 일일권 30%, 정기권 15% 감면(수료통보일 기준 1년간
  - 성함, 전화번호, 따릉이앱 ID 작성 제출(미제공시 감면 불가)
  - 서울시설공단 이용자-합격자 정보 매칭 감면 처리
  - 앱 내 이용권 결제 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

□ 교육 및 인증제 시간표

일 정	내 용
11:00~11:50	공통안전교육 -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-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-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12:00~12:30	자전거 안전교육 - 자전거관련법규 및 범칙금 등 -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및 점검사항 - 자전거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- 자전거 구조와 기능
12:30~13:00	PM 안전교육 - PM 관련법규 및 범칙금 등 - 안전한 PM 이용방법 및 점검사항 - 안전 이용 관련 영상 시청